



전기 Q&A

■ 특고압 지중인입선

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136조

Q

자가용 전기설비 중 특고압 지중인입선에 대한 정의 및 옥측 전선로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.

1. 전기설비기술판단기준 102조 및 103조에 따라 시설한 특고압 지중인입선은 특고압 가공전선에 해당하는지요?
2. 전기설비기술판단기준 95조 및 96조에 규정한 옥측 전선로의 범위 및 특고압 지중인입선이 옥측 전선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?

A

- 판단기준 제102조(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), 제103조(특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), 제95조(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) 및 제96조(특고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)는 가공 전선로에 대한 시설기준이며,
- 지중 전선로에 대한 시설기준은 제136조(지중 전선로의 시설) ~ 제142조(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KEA